'상생협력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'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수 신 대한전문건설협회
(경 유)
제 목 수·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홍보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재단에서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에 따라, 수·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

3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고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경우에만 적용되어,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 원사업자*와의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은 하도급법상 분쟁조정**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  * '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16,937개사 중 7,397개사(43.7%)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
   **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, 공정거래조정원

3. 이에,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·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수·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규모 요건이 없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사업자 간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. 하도급법 적용 제외 건설분쟁의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분쟁조정제도 안내
- 귀 협회(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등) 회원사 상담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 적어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안은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요청

나. 안내 리플렛 배포
1) 협회 홈페이지, 회원사 공지, 뉴스레터 등에 리플렛 게재
2) 회원사 교육 등에 리플렛 활용·안내

다. 신청 방법 및 문의
- 중소기업 수·위탁거래종합포털(www.smes.go.kr/poll)
-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☎ 1357(내선 9)

붙임 1. 수·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.

2. 수 · 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1부. 끝.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

	기안	검토	전결
대리	10/19	차장 10/19	부장 10/19
	정찬슬	**고윤석**	**이헌**

협조자

시행 상생거래지원부-2195 (2026.10.19) 접수 ()

우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7층 / https://www.win-win.or.kr

전화 02-368-8475 전송 02-368-8709 / jcs@win-win.or.kr / 공개